

#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06
----------	-----

제출년월일 : 2021. 10.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향상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아동학대 발생예방 및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 구 성 : 심의위원회 위원 7명 이내 구성
- 위원장 : 심의위원회 위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 심의사항
  - 1)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사항(가정위탁, 입소, 입양, 보호변경 등)
  - 2) 아동의 퇴소 조치사항
  - 3) 친권행사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 4)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 5)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입법예고(21'07.26. ~ 08.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기획실-10508(2021.08.02.)호)
- 3) 부패영향평가 : 부패 유발요인 없음(기획실-10508(2021.08.02.)호)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반영(가족복지과-32296(2021.08.20.호))

##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5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되, 영 제13조제4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 소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위촉된 것으로 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p> <p>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5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p> <p>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영 제13조제4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p> <p>⑤ 위원회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p>

# 관계법령 발췌

## □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9.>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생략

##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도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관련 시·군·구 간 조정이 필요하여 시·군·구에서 요청하는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 관련 시·군·구 간 조정이 필요하여 시·군·구에서 요청하는 사항
3. 전문성을 갖춘 적합한 위원 섭외가 어려워 시·군·구에서 심의하기 적절하지 않은 사항
4. 그 밖에 시·도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시·도 소속 4급 공무원 이상(시·군·구는 5급 공무원 이상)이 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포함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중 제1호

##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행정지원국 가족복지과 가족복지과장 김순란
연락처	(033) 330 - 2124